

김제시리·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시안
번호 | 2002-14

김제시리·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의 “리·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”를 “리·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”로 하고, 동조제6항을 “리·통장의 임기전에 해임된자는 6월이내에 재임명 할 수 없다.”를 “리·통장중 임기전에 해임된 자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 된자는 2년이내 재임명할 수 없다.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)현재 임용된 리·통장은 잔여임기 장단에 불구하고, 임기 만료후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리 · 통장의 임명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리 ·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</u> <u>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보충된</u> <u>리 · 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</u> <u>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⑥ <u>리 · 통장의 임기전에 해임된 자는</u> <u>6월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.</u></p>	<p>제3조(리 · 통장의 임명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리 ·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</u> <u>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-----</u> ----- -----</p> <p>⑥ <u>리 · 통장중 임기전에 해임된 자 또는</u> <u>임기만료로 퇴직된 자는 2년이내에</u> <u>재임명할 수 없다.</u></p>